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인에 대한 검토보고

□ 개안이유

- 한 부서(허가과)에서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중 일부를 유사업무 부서에 통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건설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총무국으로 이관함(안 제5조)

- 1)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사무 협의·조정

나. 건설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함(안 제6조)

-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변경), 신고】
- 2) 공장설립 승인
- 3)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및 협의·허가·신고지 사후관리)
- 4) 산림훼손관련 인·허가 업무처리(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

다. 건설국 허가과의 명칭을 건설국 건축과로 조정함(안 제7조제1항)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부분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 지난 제6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분장사무의 이관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일부수정안으로 의결된 바 있는 건설국 분장사무중 허가과에 속한 사무일부를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그 법령적합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내용타당성

-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건설국 분장사무중 허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일부를 허가과를 설치하기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관련사무를 소관국으로 이관하고, 『허가과』 명칭 또한 종전의 『건축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 안 제5조(총무국)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등 민원사무 협의조정 업무”를 이관하고
- 안 제6조(사회산업국)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신고업무,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신고지 사후관리 등 농지관련업무,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업무 등을 이관하며
- 안 제7조 제1항의 건설국 소관 부서명칭중 “허가과”를 “건축과”로 조정하는 것임.

○ 이와 같이 업무를 이관·조정하는 사유로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 강화로 행정의 일관성 내지 민원사무의 정확성”을 들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각종 사무의 추진은 인허가 행위와 사후관리에 따른 명확한 책임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었던 사무를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동 조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허가과를 설치한 2000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년여간 허가과에서 처리하던 “토지관련 인허가와 환경인허가 및 공장설립승인” 등의 민원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당분간 이해관련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충분한 사전홍보와 인력 및 사무의 적정한 배분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됨.